

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에 대한

# 변 안 동 의

발의연월일 : 2005년 10월 27일

발 의 자 : 오장세위원외 인

## 1. 주 문

-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중 “통합기금운용관”을 “통합기금관리관”으로 한다.
- 부칙 안 제3조중 “통합기금운용관에게”를 “통합기금에”로 한다.

## 2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기획관리실장을 “기금관리관”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려는 것이며
- 아울러 조례안 체계와 용어, 문구사용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바로잡아 의미전달을 보다 쉽고 명확히 조정하고자 함.

# 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운용·관리) ①통합기금은 통합기금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·관리하되,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<u>통합기금운용관</u>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<u>통합기금운용관</u>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<u>통합기금운용관</u>이 지정하는 도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<u>통합기금운용관</u> : 기획관리실장</p> <p>2.-3. (생략)</p> <p>제10조(예탁금의 기한전 상환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15일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<u>통합기금운용관</u>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운용·관리) ①----- ----- ----- <u>통합기금관리관</u>----- -----</p> <p>②<u>통합기금관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<u>통합기금관리관</u>----- -----</p> <p>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통합기금관리관</u>----- 2.-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0조(예탁금의 기한전 상환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<u>통합기금관리관</u>----- -----</p>





